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676
----------	------

제출년월일 : 2021년 8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대시민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120다산콜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 관련법령
 -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나. 주요 사업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운영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 지정·구정 상담서비스 제공
 - 시민소통 상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
 - 상담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발굴
 - 지정상담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방안 연구
 - 지정 특수목적 및 임시 상담서비스 수탁 수행
 - 재단 사업관련 업무시설 관리
 - 상담관련 전산장비 구축·운영 및 관리
 -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다. 출연의 필요성

- 시민중심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 기능을 수행하여 시민서비스 질 향상 및 시민중심 소통행정 실현
- 상담관련 과학적 데이터 축적과 분석을 통해 시정서비스 개발 및 제공

라. 기관현황

-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 28길 23
- 규모 : 연면적 4,615m² (지하1~지상5층)
- 위치도 및 전경사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시민봉사담당관 민원기획팀 윤성원 (☎2133-6542)

붙임

2022년도 120다산콜재단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2년 예산(안)	비고
예산총계	27,918,316	출연금(27,132,327) + 결산잉여금(785,989)
사업비	2,149,356	
1. 시민중심 스마트 상담시스템 체계 구축 및 운영	1,768,485	
1-1. 상담정보시스템 운영	1,418,325	
지급임차료	167,352	사무용 S/W 임차료
지급수수료	1,250,973	상담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등
1-2. 스마트 상담 체계 구축	350,160	
공공요금 및 제세	50,160	재택근무용 통신회선료
연구개발비	300,000	AI상담서비스 및 빅데이터 시스템구축 ISP
2. 상담품질 향상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237,100	
2-1. 직원역량강화 교육	237,100	
교육훈련비	183,400	직무 및 역량 교육, 서비스품질 향상교육 등
지급수수료	53,700	서비스품질 점검 및 개선분야 도출 등
3.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12,300	
3-1. 상담지식정보 현행화	4,800	
도서인쇄비	3,000	자료집 제작
회의운영비	1,800	시·구 담당자 회의비
3-2. 상담데이터 분석 및 활용	7,500	
도서인쇄비	7,500	상담데이터 분석 및 활용 자료집 제작
4.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강화	131,471	
4-1.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프로그램 운영	131,471	
지급임차료	3,816	힐링룸 비품 렌탈(안마의자)
지급수수료	91,080	힐링룸 헬스키퍼(주·야간) 운영
교육훈련비	36,575	감정노동 보호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18,289,002	
급여	13,608,562	임직원 월급여(420명), 식대교통비(상담직)
제수당	2,681,747	직책 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기타직보수 (업무직)	437,936	12명
퇴직급여	1,560,757	
운영비	6,666,958	
경비	5,073,158	복리후생비, 공공요금및제세, 임차료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63,000	청사환경 개선비, 냉난방기 교체 등
성과급	1,430,800	경영평가 성과급
예비비	813,000	
예비비	813,000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